

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이태성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급속한 도시화로 서울과 지방,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상생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,
- 또한, 서울시는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가진 “지역 상생발전 위원회”의 역할을 10명으로 구성된 대회협력기금의 국내협력계정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서울시의 상생교류 사업 예산이 2017년 98억원(일반회계 82억, 기금 16억)에서 2020년 644억원(일반회계 626억, 기금 18억)으로 대폭 증가하고,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

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□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가.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병행 규정을 삭제함(안 제9조제2항).
- 나.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)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-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와 타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및 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류협력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켜 도시와 농촌,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